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99
----------	-------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남인순 · 권향엽 · 전진숙
서영석 · 윤종균 · 백혜련
김문수 · 이수진 · 박희승
전종덕 · 백승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 판정에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출근을 이어오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은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가 아프더라도 안심하고 쉴 수 없는 구조와, 대체교사 확보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의 휴가·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 개별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별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단가와 조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기에 대체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무리하게 출근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

의 안전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병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대체교사의 인건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건강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및 제26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배치기준은”을 “배치기준(대체교사의 배치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 ③ 병가·연가·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사(이하 “대체교사”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기간제 교사”를 “기간제 교사, 대체교사”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유치원교사의”를 “유치원교사·대체교사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② (생략) <u><신설></u></p> <p>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 (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u>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23조(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u>기간제 교사</u>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p>	<p>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병가·연가·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사(이하 “대체교사”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u></p> <p>④----- ----- ----- ----- -----<u>배치기준</u> <u>(대체교사의 배치를 포함한다)</u> ----- ----- ----- ----- -----</p> <p>제23조(강사 등) ① ----- ----- ----- -----<u>기간제 교사, 대체교사</u>----- ----- -----</p>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생략)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③ -----

-----유치원교사·대체교사의-----

-----.